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7

발의연월일: 2024. 6. 20.

발 의 자:이병진·조 국·임호선

윤준병 · 송옥주 · 임미애

이연희 · 한정애 · 한민수

윤후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해양환경의 보전·관리를 위하여 국제협력의 촉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정부 또는 해양환경 관련 국제기구와 해양환경정보 등을 교류하고 상호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.

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미세플라스틱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각종 해양환경 오염위기에 직면하였는데, 해양오염은 해류의 순환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오염국 연안에만 한정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대한 민국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해양환경 오염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. 따라서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북한과의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나, 현행법은 남북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.

또한 남북은 환경운명 공동체이자 통일 이후 한반도 해양환경 보전

· 관리의 공동주체로서 이와 관련하여 통일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남북 간 상호협력과 교류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통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제3항신설).

법률 제 호

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4조의 제목 "(국제협력의 촉진)"을 "(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촉진)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정부는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남북 간 상호협력과 교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북한의 해양환경에 관한 정책·제도 및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·연 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국제협력의 촉진) ①・②	제24조(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
(생 략)	<u>촉진)</u> ①·②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③ 정부는 해양환경을 보전하
	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남
	북 간 상호협력과 교류를 증진
	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
	이를 위하여 북한의 해양환경
	에 관한 정책·제도 및 현황
	등에 대하여 조사・연구하여야
	<u>한다.</u>